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12230 번 호

발의연월일: 2021. 8. 25.

발 의 자:김영진·김영배·서영교

김경협·박재호·김진표

이형석 • 백혜련 • 김수흥

고용진 • 양기대 • 우원식

김민철 · 김주영 · 홍영표

오영환 • 이해식 • 박완주

정일영 · 김성주 · 오영훈

임호선 · 양경숙 · 한병도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국세-지방세 구조를 70대 30 수준으로 개선하고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4 대 26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122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7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2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를 "1천분의 7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특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천분의 763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37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	관한 특례) ①
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	
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79퍼센트를 부가가	<u>1</u> 천분의 747을 부가
치세로, 21퍼센트를 지방소비세	가치세로, 1천분의 253을 지방
<u>로</u> 한다.	소비세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